청탁은 거절! 부패는 단절! 행정은 친절!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동부지청

수신 관내 건설현장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철저

1. 귀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
2.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에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3. 하지만,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**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일용근로자**(외국인, 용역업체 인력) **채용**, **이수증 위조**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전파하오니, 동일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전체(원·하청)에 재확인·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이수증(카드) 위조 사례 : 이수증 사본 제출
→ 이수증 또는 모바일 앱(건설안전패스) QR코드 스캔하여 진위 여부 확인
→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 이용 본인 인증 후 모바일로 이수내역 확인
② 미이수 사례 : 이수증 분실 및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유
→ 교육기관 또는 공단 지사 이수증 재발급본 확인

4. 아울러,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~제32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정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동부지청장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동부지청장인

근로감독관 정용빈 과장 전결 2026. 10. 23. 이종인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감독과-2172 (2026. 10. 23.) 접수

우 44059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50 4층 산재예방감독과 / http://moel.go.kr

전화번호 052-259-3367 팩스번호 0503-8803-0885 / bin89@korea.kr / 비공개(7)